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(안) 의견청취안

의 안 번 호 436 제출년월일 : 2019년 2월 1일 제 출 자 :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19조에 의거 「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(안)」을 마련하였고,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 관련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.
- 나. 「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(안)」에 대하여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 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(안)
 - 우시장현대화 및 상권활성화, 주공혼재지역 지역특화산업 육성·지원 전략
 -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

3. 추진경위

○ '17.02.16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

○ '17.08.17.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착수

○ '17.10.24. 행정2부시장 보고(우시장 추진계획 및 현안업무)

○ '17.11.15.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

○ 2018.03~2018.04. 도시재생대학 1기 운영(6주)

○ 2018. 03.~10. 협의체 간담회 진행 및 주민의견 수렴

- 주민, 상인 협의체 간담회 진행 (월2회)

- 산업체 및 유관기관 대상 찾아가는 인터뷰 실시(21개 기관)

- 시범사업 실시 및 도시재생사업 홍보 (소식지발행, 독산매거진 발간, 지도발행 등)

○ '18.05.14.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

○ '18.10.~11. 도시재생대학 2기 운영

○ '18.12.12. 「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(안)」 공청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제19조 및 제20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의견청취사항

※ 작성자 : 재생정책과 재생사업팀 장수련 (☎ 2133-8637)